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440
----------	-------

발의연월일 : 2026. 1. 30.

발 의 자 : 배준영 · 송석준 · 김희정
김용태 · 이종욱 · 김성원
이상휘 · 최은석 · 김소희
서명옥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공공기관을 준정부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어 공기업에 해당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의료기관의 개설이 불가능함. 그런데 인천국제공항은 2024년 국제여객순위 세계 3위로 기록될 만큼 이용객 수가 많음에도 공항 근처에 응급의료 가능한 종합병원이 없어 공항에서 발생하는 대형 항공사고 등으로 인한 응급환자의 발생이나 공항을 통한 국제적 감염병 유입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의료기관 개설 주체에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추가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함으로써 공항 주변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개선하고 대형 항공사고나 국제적 감염병 유입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제5호 및 제64조제1항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배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4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5호 중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로 한다.

제64조제1항제4호 중 “지방의료원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또는 인천국제공항공사”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3조(개설 등) ① (생략)	제33조(개설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② ----- -----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u>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u>	5. ----- ----- ----- ----- ----- ----- <u>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u>
③ ~ ⑩ (생략)	③ ~ ⑩ (현행과 같음)

